



S&S AUDITING AND CONSULTING COMPANY

8th Floor, 41 Nguyen Thi Minh Khai Street, District 1, Ho Chi Minh City

Tel: 028-3910.4996 – 3910.4997

Email: SAMUEL230@HANMAIL.NET

Fax: 028-3910.4998

SAMUEL230@SSAUDIT.COM

S&S's Newsletter – 2020 년 01 월

고객사 및 독자분께,

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, 번창하시길 바랍니다.

S&S 회계법인의 2020년 01월 뉴스레터를 소개드립니다.

본 뉴스레터가 귀사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,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: samuel230@hanmail.net

S&S Auditing and Consulting Co., Ltd

Head office:

8th Floor, Yoco Building
41 Nguyen Thi Minh Khai St, Ben Nghe Ward,
Distict 1, TP. HCM, Viet Nam

Tel: 84 (28) 39 104 996

Fax: 84 (28) 39 104 998

Web: <http://www.ssaudit.com>

Hanoi office:

7th Floor, Vinaconex 9 Building,
Pham Hung St., Me Tri Ward, Tu Liem Dist,
Hanoi, Viet Nam

Tel: 84 (24) 62 512 199

Fax: 84 (24) 62 512 201

유용한 정보가 되시기 바라며, 이와 관련하여 저희 회계법인에서 도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


S&S AUDITING AND CONSULTING COMPANY

8th Floor, 41 Nguyen Thi Minh Khai Street, District 1, Ho Chi Minh City

Tel: 028-3910.4996 – 3910.4997

Email: SAMUEL230@HANMAIL.NET

Fax: 028-3910.4998

SAMUEL230@SSAUDIT.COM

목차.....

1. 세무 및 세무행정

1.1 해외투자 프로젝트의 법인세(CIT) 공제에 대한 공문번호 90749/CT-TTHT

(발표일: 2019년 12월 04일)

1.2 보험회사의 운영, 관리, 감독 및 수집 요금에 대한 시행규칙 01/2020/TT-BTC

(발표일 : 2020년 01월 03일)

2. 관세

2.1 공손품 부품의 수입 관세에 대한 공문번호 13/TCHQ-TXNK (발표일 : 2020년 01월 02일)

3. 기타

3.1 국외 투자 분야의 추가 행정 절차 발표에 대한 결정문 1967/QD-BKHDT

(발표일 : 2019년 12월 13일)



S&S AUDITING AND CONSULTING COMPANY

8th Floor, 41 Nguyen Thi Minh Khai Street, District 1, Ho Chi Minh City

Tel: 028-3910.4996 – 3910.4997

Email: SAMUEL230@HANMAIL.NET

Fax: 028-3910.4998

SAMUEL230@SSAUDIT.COM

1.1 해외 투자프로젝트의 법인세(CIT) 공제에 대한 공문번호 90749/CT-TTHT (2019.12.04)

하노이 세무서는 해외 투자프로젝트(특히 미얀마)의 법인세 손금 산입에 대해 다음의 공문을 발표했습니다.

미얀마에 투자한 프로젝트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:

- 베트남 법인이 미얀마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미얀마에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 베트남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 시 미얀마에서 발생한 법인세는 베트남 법인의 법인세와 합산 과세되나 시행규칙 204/2013/TT-BTC 제 48 조에 근거하여 미얀마에 납부한 법인세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베트남에 납부할 법인세 총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. 미얀마에 납부한 법인세의 공제와 관련하여는 시행규칙 156/2013/TT-BTC 제 V 장 제 44 조 제 4 항목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.
- 만약 베트남 법인이 미얀마에 고정사업장 없이 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미얀마 세무국에 법인세 환급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. 미얀마 세무국으로부터 법인세를 환급이 가능할 경우 이는 베트남 법인의 베트남 내 세무신고 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

1.2 보험회사의 운영, 관리, 감독 및 수집 요금에 대한 시행규칙 01/2020/TT-BTC (2020.01.03)

재무부는 보험회사의 운영 및 관리 및 감독을 위한 수집, 송금 및 제공에 관련 요금 징수 기준에 대하여 다음의 시행규칙을 발표했습니다.

- 외국 보험 회사의 지점인 경우 : 주보험 금액의 0.03% (환불 후 또는 주 보험료 공제 후의 금액)
- 재보험인 경우 : 재보험 금액의 0.03% (환불 후 또는 재보험 공제 후의 금액)
- 보험 중개업인 경우 : 중개활동 수익의 0.03%

요금은 연 2 회, 매년 8 월 31 일과 4 월 30 일에 징수됩니다.

본 시행령은 2020 년 2 월 20 일 발효되며 2020 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.

2.1 공손품 부품의 수입 관세에 대한 공문번호 13/TCHQ-TXNK (2020.01.02)

베트남 관세청은 수출입법 107/2016/QH13 제 2 조 공손품을 대체하기 위해 외국 회사가 보낸 부품의 관세에 대하여 공문을 발표했습니다.

공손품 대체하기 위해 외국 거래처로부터 부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수입 단계에서 관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.



S&S AUDITING AND CONSULTING COMPANY

8th Floor, 41 Nguyen Thi Minh Khai Street, District 1, Ho Chi Minh City

Tel: 028-3910.4996 – 3910.4997

Email: SAMUEL230@HANMAIL.NET

Fax: 028-3910.4998

SAMUEL230@SSAUDIT.COM

판매 계약서가 없거나 상업 세금계산서가 없는 무료 견본에 대한 관세 결정의 경우 시행규칙 60/2019/TT-BTC 제 1 조 9 절에 의거하여 관세가 결정, 부과됩니다.

3.1 국외 투자 분야의 추가 행정 절차 발표에 대한 결정문 1967/QD-BKHDT (2019.12.13)

기획 투자부는 베트남 기업의 해외 투자와 관련한 베트남 내 절차 이행과 관련한 본 결정문을 발표하였으며, 결정문에는 다음의 절차가 안내되어 있습니다.

1. 해외투자 운영에 대한 통지
2. 베트남으로의 이익 이전 연장에 관한 승인

투자프로젝트가 해당 국가에서 승인 또는 허가 된 후 60 일 이내에 투자자는 해외투자 운영 통지 서류를 기획투자부, 베트남 중앙은행 및 해당 국가의 베트남 대표처(대사관 등의 기관)에 송부해야 합니다.

통지 서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

- 해외 투자 운영에 대한 통지서 –시행규칙 03/2018/TT-BKHDT 와 함께 발행된 양식 9 번
- 역외 투자 증명서 사본;
-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해당국의 승인서 사본;
- 역외 투자 자본금 계좌 개설에 대한 금융기관의 승인서 사본;
- 기타 관련 서류 사본 (있을 경우에 한함).

투자자가 해외 투자 프로젝트에서 수익이 발생했지만 이를 베트남으로 이전하지 않은 경우, 해당 법인은 기획투자부를 통하여 베트남으로 수익 이전을 승인하는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.

본 결정문은 서명일자부터 발효됩니다.

=====0o0=====